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3258, 3259 호
- 다. 제출일자 : 2022. 5. 30.
- 라. 회부일자 : 2021. 6. 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1) 세입결산

【일반회계】 해당없음

【소방특별회계】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소방특별회계	896,524	899,934	902,173	902,016	5	153	100.0

- 세입 예산현액은 8,999억 34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9,021억 73 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9,020억 16백 만원을 수납하고, 5백 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1억 53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2)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일반회계	852,693	-	1,165	-	-	-	853,858	853,336	-	-	-	-	522 (0.1%)

-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538억 58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8,533억 36백 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0.1%인 5억 22백 만원이 발생되었음.

【소방특별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합계	1,749,217	3,411	1,165	-	699 (-699)	-	1,753,792	1,711,267	4,065	738	3,327	157	38,303 (2.2%)
일반회계	852,693	-	1,165	-	-	-	853,858	853,336	-	-	-	-	522 (0.1%)
특별회계	896,524	3,411	-	-	699 (-699)	-	899,934	857,931	4,065	738	3,327	157	37,781 (4.2%)

-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538억 58백 만원과 소방특별회계 8,999억 34백 만원을 포함하여 총계 예산 규모로 총 1조 7,537억 92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97.6%인 1조 7,112억 67백 만원을 지출하고 0.2%인 40억 65백 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383억 3백 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 예비비

【일반회계】

○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 4건에 6억 43백 만원으로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사무관리비 72백 만원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공공운영비 51백 만원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시설비 4억 14백 만원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백 만원임.

【소방특별회계】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6억 99백 만원으로
 - 인력운영비 보수 6억 99백 만원임.

○ 이체

- 예산 이체는 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없음.

○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소방특별회계 2건에 15억 82백 만원으로
 - 소방행정타운 건립 민사소송 배상금 3억 72백 만원
 -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비 증액분 12억 1천만원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40억 65백 만원으로 명시이월 7억 38백 만원, 사고이월 33억 27백 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7,537억 92백 만원 대비 0.2%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83억 3백 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조 7,537억 92백 만원 대비 2.2%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1	1,753,792	38,303	2.2%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 잔액 : 359억 9백 만원
- 낙찰차액 잔액 : 9억 50백 만원
-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 7억 38백 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5억 16백 만원
- 보조금정산 잔액 : 1억 90백 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1	852,693	-	1,165	-	-	-	853,858	853,336	-	-	-	-	0.1
2020	821,229	-	12	-	-	-	821,241	821,241	-	-	-	-	0
2019	835,047	-	-	-	-	-	835,047	835,047	-	-	-	-	0

가) 집행잔액 (불용액) (결산서 p.19)

- 일반회계 세출은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회계간 이동에 따른 것이나 금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11억 65백만원을 편성 후 5억 2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나) 예비비 (결산서 p.29)

-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한 공통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사용한 것으로 총 4건에 11억 65백만원을 편성해 이중 6억 42백만원을 사용하고 5억 2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이는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증가로 시민의 생존을 향상을 위한 전담구급대(15개대) 긴급 추가확충 운영(기간제 노동자 135명 채용)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채용인원이 미달로 인한 일부 구급대 미운영에 따른 것임.

- 예비비의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가급적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집행잔액 5억 22백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에 신중함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요가 요망된다 하겠다.

나. 소방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2021	896,524	899,934	902,173	902,016	5	153	99.9
2020	856,889	870,212	871,955	871,837	1	117	99.9
2019	861,324	865,331	865,617	865,505	0	112	99.9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8,999억 34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9,021억 73백 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9,020억 16백 만원을 수납하고, 5백 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1억 53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임.

나) 세수추계 (결산서 p.37~40)

- 소방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8,999억 34백 만원 대비 약 22억 39백 만원이 추가 징수 결정되었으며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차이가 3천만원 이상 혹은 50% 이상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다한 항목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경상적 제외수입						
기 타 사 용 료	22,895	9,418	9,418	△13,477	△58.9%	코로나19로 인한 기타사용료(광나루안전체험관 강당 대관료 등) 수입 감소,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지연으로 수납액 감소
증 지 수 입	107,096	54,286	54,286	△52,810	△49.3%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소방청 주관으로 증지수입 감소(신규채용 증지수입 없음) 예산추계 대비 민원실 증지수입(방염처리 성능검사, 위험물 인·허가 등) 감소
기 사 업 수 입	56,166	0	0	△56,166	△100.0%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수탁교육 미진행
임시적 제외수입						
불 용 품 대	354,715	164,188	157,068	△190,527	△53.7%	코로나 환자 이송건수 증가로 인한 전담구급대 운영으로 구급차 불용연기, 행안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 폐차 매각으로 인한 매각 대금 감소 및 불용소방차량 무상양여
위 약 금	216,645	122,631	122,631	△94,014	△43.4%	경기 등 영향을 받아 예측이 어려워 '20년 징수전망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위약금 발생 감소
그 외 수 입	299,484	778,741	778,741	479,257	160.0%	각종 잡수입으로 예측이 곤란하여, 예산추계시 최근 5년간('19~'15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과오납 및 각종 정산 환급금, 감사결과 환수금 등 증가
지 난 연 도 수	13,131	123,508	14,780	110,377	840.6%	납부독촉 및 적극적인 압류에도 납세태만, 무재산 등 체납으로 지난해도 수입 증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 징 금	33,977	53,820	53,820	19,843	58.4%	최근 5년간(19~15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 하였으나, 추계 대비 부과건수가 증가
이행 강제 금	17,625	0	0	△17,625	△100.0%	최근 2년간(19~18년) 부과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평균 부과건수로 추계 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없음
기타 과 태 료	459,235	550,330	508,255	91,095	19.8%	최근 3년간(19~17년) 일반부과 평균 징수액과 '20년 신고포상금 징수전망액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의 증가
보전수입 등						
국고 보조 금 사 용 잔 액	27,661	715,268	715,268	687,607	2,485.8%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매출 저조 및 영업주 미협조로 간이SP 설치 지원 집행잔액 발생,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복지요원 채용행사 등 미개최로 업무 추진비 등 집행잔액 발생
민간 용자 금 회 수 수 입	2,133,000	3,420,000	3,420,000	1,287,000	60.3%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용자금 지원 중도상환액의 증가

- 정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예산액 2,29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942만원으로 1,350만원(58.9%)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광나루안전체험관 다목적실 등 폐쇄와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 지연으로 설치 완료 시까지 주차요금 징수가 불가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감소함에 기인한 것임.

[표] 최근 3년간 기타사용료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2021	22,895	9,418	9,418	△13,477	△58.9%	코로나19로 인한 기타사용료(광나루안전체험관 강당 대관료 등) 수입 감소,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지연으로 수납액 감소
2020	16,637	7,243	7,234	△9,394	△67.8%	코로나19로 인한 기타사용료(광나루안전체험관 강당 대관료 등) 수입 감소
2019	16,182	5,213	5,213	△10,969	△67.8%	남산 예정자락 재생공사가 연장되어 '19.7월부터 본부 주차장 운영으로 주차 요금 징수액 감소 등

- 소방학교 부설주차장의 경우 소방행정타운 공사가 완료(2019년)되고 2020년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소방행정타운 준공시까지도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무인주차시스템(주차차단기, 카메라 등) 설치를 간과하여 수년간 세입예산편성을 누락시킴으로써([표]참조) 주차요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세심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소방행정타운 무인주차시설관련 예산 미편성 경위

구분	내용
소방행정타운 사업 추진 ~2019년 회계연도	- 소방행정타운 당초 계획부터 포함되지 못하여 미편성
2020년 회계연도	- 2020년도 본예산 세입에 주차요금징수 항목은 반영하였으나 '무인주차시스템'설치비 예산 미편성 - 2020년도 1차~4차 추경 기간에도 미편성
2021년 회계연도	- 2021년 본예산에도 미편성 -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포함(2021년 12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함)

- 증지수입은 예산액 1억 7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5천 4백만원으로 5천 3백만원(49.3%)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주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변경되어 신규채용에 따른 증지수입 감액과 방염 성능시험 의뢰 건수 등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표] 최근 5년간('21 ~ '17) 증지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2021	2020	2019	2018	2017
	합계		54,286	80,294	100,979	131,497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0	18,755	18,505	40,085	13,445
	민원실 증지 수입	54,286	61,539	82,374	91,412	91,407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의 경우, 2020년 예산편성 당시에 기존과 동일하게 각 지자체 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2월 소방청에서 일괄 채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향후, 사업 변동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타사업수입은 예산액 5천 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0원으로 5천 6백만원(100.0%)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방안전실무교육 등 전문교육과 지휘역량강화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수탁교육이 미실시 됨에 따른 것임.

[표] 최근 3년간('21 ~ '19) 기타사업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21년		2020년		2019년	
	교육인원	금 액	교육인원	금 액	교육인원	금 액
인원 및 금액	0	0	174	20,082,420	888	37,859,980

○ 다음으로, 불용품매각대금은 소방차량, 기타물품 등의 노후화에 따라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예산액 3억 55백만원 대비 1억 91백만원(53.7%) 감소한 1억 64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이는 행안부¹⁾ 및 서울시 지침²⁾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불용 경유차량은 매각 대신 반드시 폐차처리토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기존의 예산추계방식³⁾과 동일하게 매각 대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표] 2021년 불용차량매각대금 세입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분		2021년 예산추계			실제 매각 세입	
내용연수	차종	매각대수	평균매각단가	징수전망	매각대수	세입금액
계		51		323,790	28	143,931
12년	고가차	1	24,000	24,000	1	9,175
	조명배연차	2	11,000	22,000	2	19,690
10년	펌프차	4	13,999	55,996	4	25,331
8년	행정차 등(이륜차포함)	26	4,000	104,000	15	52,440
	구조공작차	6	11,883	71,298	0	
	구조버스	1	12,500	12,500	1	3,110
	지휘버스	1	11,500	11,500	1	7,269
	재난현장지휘차	2	4,000	8,000	2	8,610
5년	구급차	8	1,812	14,496	0	
	화학차	-	-	-	2	18,306

1) 「행정안전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알림」, 서울시 총무과-29851, 2020.10.13

2)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66호

3) '21년 교체예정차량 대수와 차종별 평균매각단가, 기타물품의 최근 5년간(최고·최저 제외) 평균 수납액을 반영하여 추계

- 코로나 이송 건수 증가로 전담구급차 운영을 위해 폐차 대상인 구급차 8대의 불용을 연기하고, 나머지 불용차량 중 8대 (펌프차 6대, 구조공작차 2대)를 해외 무상양여함에 따른 것으로,

[표] 2021년 해외무상양여 현황

(단위 : 대)

구 분	합계	몽골	인도네시아
합계	8	4	4
펌프차	6	2	4
구조공작차	2	2	0

- 코로나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예산 추계와 실제 집행이 이처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 바 예산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위약금의 경우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 및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으로 예산액 2억 17백만원 대비 94백만원(43.4%) 감소한 1억 23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2021년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방관서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징수금액	지체일수	비 고
1	소방재난본부	웨어러블 카메라 등 2종 구매	공개입찰 (일반경쟁)	285,934	59,932	262	지연배상금
2	소방재난본부	구급장비 구매	공개입찰 (일반경쟁)	1,107,000	50,099	160	지연배상금

3	소방재난본부	마취총 등 2종 11점 구매	공개입찰 (제한경쟁)	55,391	133	3	지연배상금
4	소방재난본부	화학작용제탐지기 등 구매	공개입찰 (일반경쟁)	34,207	519	2	지연배상금
5	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활동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동영상 제작	1인 수의계약	5,900	15	2	지연배상금
6	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구조선박 소모품 구매	전자공개 수의계약	19,943	1,994		위약금 (계약해지)
7	광진소방서	광진소방서 구의유수지 신설 기본구상 조사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44,840	3,264	56	지연배상금
8	동대문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전자공개 수의계약	48,217	1,880	30	지연배상금
9	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용역	1인 수의계약	52,200	1,175	18	지연배상금
10	강동소방서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용역 계약	1인 수의계약	51,200	2,596	39	지연배상금
11	강북소방서	미아119안전센터 석면제거 및 재설치 공사	공개입찰 (제한경쟁)	227,590	1,024	9	지연배상금
합 계				1,932,423	122,631		

※ 전체 지연배상금 11건 중 일반경쟁 3건, 제한경쟁 2건, 전자공개 3건, 수의계약 3건

- 이는 예년에 비해 위약금 발생이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연배상금 건 중 지체일수가 262일인 ‘웨어러블 카메라 등 2종 구매’건은 계약업체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해 발생하였고,
- 지체일수 160일인 ‘구급장비 구매’건은 납품물품 중 고급형 심장충격기 일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제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납품이 지연되었으며,
- ‘수난구조대 구조선박 소모품 구매’건은 계약당사자가 물류비 상승 및 다수 품목에 대한 납품 어려움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옴에 따라 위약금 2백만원을 배상한 건임.

- 이는 소방장비 납품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들의 입찰참여 및 낙찰로 인해 물품계약 체결 후 납품을 못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입찰공고시 물품 납품이행능력⁴⁾의 평가 배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원활한 납품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광진소방서 구의유수지 신설 기본구상 조사용역’건은 계약업체에서 납품한 용역결과물의 검수 결과, 과업지시서 미이행 항목들이 발생해 이를 보완 요청하면서 최종 검수가 56일 지연된 것이며,
- ‘동대문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건과 ‘강동소방서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용역 계약’건은 전국적으로 소방시설 수요 과잉 현상으로 업체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각각 30일, 39일 납품 지연됨에 따른 것임.
- 한편, 최근 3년간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 29건, 2020년 11건, 2021년 11건이 발생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라 생각되나 더욱 철저한 검증과 납품과정 감독을 통해 소방장비 보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 198호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표] 최근 3년간('21 ~ '19) 계약방법에 따른 지연배상금

구분		연도별	합계	2021	2020	2019
계약방법	일반경쟁		13	3	2	8
	제한경쟁		14	2	5	7
	전자공개		5	3	0	2
	수의계약		11	3	0	8
	조달구매		8	0	4	4
합계			51건	11건	11건	29건

- 다음으로, 그외수입은 일반 세입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액 2억 99백만원 대비 4억 79백만원(160.0%) 증가한 7억 79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최근 5년간 그외수입 수납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2021	2020	2019	2018	2017
예산액(a)		299,484	266,207	377,215	193,433	122,081
징수결정액(b)		778,741	498,580	276,654	412,247	336,733
차액(c=b-a)		479,257	232,373	△100,561	218,814	214,652
증감률(c/a*100)		160.0%	87.3%	△26.7%	113.1%	175.8%

- 주요 증가 사유는 소방행정타운 내 전문훈련시설 총4종⁵⁾ 설치 건과 관련해 계약업체인 '이알에스아시아'에서 총3종⁶⁾에 대하여는 납품을 완료하고

5) 전문훈련시설 4종: 실화재훈련시설(CFBT컨테이너), 차량화재훈련시설, 위험물화재훈련시설, 화재시뮬레이터

6) 일부 납품: '20.12월 차량화재훈련시설, 위험물화재훈련시설, 화재시뮬레이터 3종은 납품·설치를 완료

- 실화재훈련장의 경우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네덜란드 업체인 '라이언사'에 제작납품 의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불가해짐에 따라
- 2020년 12월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미 지급된 선금금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아 선금금 보험금 4억 15백만원을 청구 ('21.01.12.)하여 2021년 세입 조치함에 따른 것임. ([표]참조)
- 이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문제라 사료되는 바, 업체 선정시 기술력 검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표] 실화재훈련장 등 전문훈련시설 제작 설치 계약 해지 건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계약명	실화재훈련장 등 전문훈련시설 제작 설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 기술설,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
계약기간	2019. 12. 20. ~ 2020. 11. 30. [총 346일] (2019. 12. 20. ~ 2020. 4. 15. 최초계약)
계약해지	2020. 12. 31. / 지체일수 31일
계약금액	금1,901,000,000원 - 선금지급 : 950,500,000원 - 일부 분할납품 : 535,903,330원
청구 보험금	금414,596,670원
납품지연사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외국산 부품 수급이 늦어져 기한 내 납품 불가
계약해지사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납품 불가
업체명	(주)이알에스아시아(대표자 김○○)
비고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외국산 부품을 사용한 계약 지체가 늘어나자 행정안전부는 계약 운용 특별지침 수립('20.2.) → 동 지침 의거, 납품 기한을 20.4.15.에서 20.11.30.로 연장하였으나 최종 미납으로 불용처리한 건임.

-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이월된 수입으로 예산액 1천 3백만원 대비 1억 1천만원(840.6%)이 증가한 1억 24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연도 1월에 과태료, 체납액 등의 징수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세수추계 산출 근거를 보다 정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최근 4년간 체납액에 대한 이월사유별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49.7%(44건, 5천 2백만원)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 38.7%(14건, 4천만원), 폐업 또는 부도 8.0%(5건, 8백만원), 행방불명 3.6%(2건, 4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참조)

[표] 지난연도수입 부과년도별 미수납내역

(단위 : 천원)

미수납사유	합계		부과년도							
			2020년		2019년		2018년		2018년 이전	
합 계	66건	104,127	13건	12,291	19건	44,311	11건	15,283	23건	32,242
무재산	14건	40,333	5	7,610	3	17,939	1	773	5	14,011
행방불명	2건	3,769			1	701	1	3,068		
납세태만	44건	51,720	7	4,680	15	25,671	9	11,442	13	9,927
폐업 또는 부도	5건	8,304							5	8,304
채무회상법에 의한 유예	0건	0								
격치 또는 압원	0건	0								
소송계류	0건	0								
국외이주	0건	0								
자금압박	0건	0								
기타(분납)	1건	1	1	1						

- 이처럼 고질적 체납이 누적되어 누계체납액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불납결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납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과징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사항을 위반⁷⁾시 부과되는 것으로, 예산액 3천 4백만원 대비 2천만원(58.4%) 증가한 5천 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음.

[표] 최근 5년간('21 ~ '17) 과징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1	2020	2019	2018	2017
과징금 예산액	30,209	33,977	29,175	27,642	36,252	24,000
징수결정액	46,980	53,820	79,970	42,965	43,116	15,030
부과건수	14건	12건	17건	10건	23건	8건

- 이는 세입예산 추계 당시 최근 5년간('19~'15)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징수합계액에서 최고·최저 금액을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의 경우 업체의 영업정지기간(일)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각 구간별 범위 내 1일 과징금 금액⁸⁾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7) ※ 과징금 부과 예시: 하도급 제한 위반,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 설계 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 등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발생해 예산편성액 대비 증가한 것임.

○ **이행강제금**⁹⁾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비상구 훼손 또는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함께 부과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예산액 1천 8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0원으로 1천 8백만원원(-100.0%)이 감소하였음.

- 이는 최근 2년간('19년~'18년) 부과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평균 부과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제한 조치 등의 이유로 2021년도는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없음에 따른 것임.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

9) ※ **이행강제금** :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

예)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훼손 및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위법 사항에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표] 최근 5년간('21 ~ '17) 이행강제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1	2020	2019	2018	2017
이행강제금 예산액	8,555	17,625	10,616	6,000	4,533	4,000
징수결정액	10,650	0	10,000	19,000	16,250	8,000
부과건수	3건	0건	1건	4건	5건	4건

- 다음으로, 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¹⁰⁾은 예산액 2천 8백만원 대비 6억 87백만원(2,485.8%) 증가한 7억 15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표] 20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과목	국고보조금 예산	사용잔액
계			5,612,379	715,268
1	소방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795,950	68,065
2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5,254	0
3	노후 고시원 등 간이SP설치 지원사업		1,000,000	43,333
4	노후 고시원 등 간이SP설치 지원사업(이월)		2,789,843	597,377
5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33,500	2,972
6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0,250	3,521
7	구급지도의사 운영	기금	81,000	0
8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180,000	0
9	의료지도의사 운영(인력운영비)		164,700	0
1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341,882	0

10) ※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전년도(2020년)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검사 승인
- 당해연도(2021년) 국가보조금 등 집행잔액 세목으로 세입 조치
- 익년도(2022년) 세출예산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편성하여 익년(2022년) 중앙부처에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

- 이중 ‘소방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양성 및 운영’은 예산편성 당시 106명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근무는 103명이 근무하였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실시 등으로 인해 급식비·교통비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 ‘노후 고시원 등 간이SP설치 지원사업’은 고시원 영업주의 소극적인 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악화 등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보전수입 중 민간용자금회수수입은 무주택 소방공무원에게 전세용자금을 지원하고 회수하는 용자상환금으로 예산액 21억 33백만원 대비 12억 87백만원(60.3%) 증가한 34억 2천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당초 예상했던 상환 인원 및 금액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예산편성에 앞서 시중금리의 변동과 상환계획에 대한 사전조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최근 3년간('21 ~ '19) 민간용자금 회수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예산액	수납 금액	상환 인원	예산액 대비 수납률
2021		2,133,000	3,420,000	52명	160.3%
2020		1,926,649	2,925,000	56명	151.8%
2019		2,293,200	2,155,000	41명	94.0%

다) 결손처분(결산서 p.37~40 p.117)

- 소방특별회계 결손처분은 3건(460만원)으로, 이는 모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제3호¹¹⁾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경과)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것이기는 하나

[표] 결손처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소방서	체납 금액	최초 부과 연월	최초 부과금액	결손사유	부과 세입과목
	합 계	4,602				
1	종로	885	2015.11	500	시효소멸(5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2	마포	3,540	2016.01	2,000	시효소멸(5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3	구로	177	2016.02	100	시효소멸(5년)	'소방시설 공사법' 위반 과태료

- 결손처분으로 처리하기 전 재산조회 및 행방조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부적절한 결손처분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라) 미수납액(결산서 p.37~40, p.121)

- 미수납액은 1억 53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11)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소방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사유 \ 과목	계	불용품 매각대금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153,321	7,120	42,075	104,126
	100%	4.6%	27.4%	67.9%
무재산	40,333			40,333
행방불명	5,829		2,060	3,769
납세태만	71,485		19,764	51,720
폐업 또는 부도	8,304			8,304
자금압박	15,316		15,316	
기타	935		934	1
납기미도래	11,120	7,120	4,000	

* 납기미도래 : 연도말 부과로 납부기간 내 회계가 마감되어 미수납 처리된 건

○ 상기 [표]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된 세입과목 중 지난연도수입(67.9%)과 과태료(27.4%)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46.6%), 무재산(26.3%)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납세태만 체납자의 경우 고의체납의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수납 독려와 체납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임.

마) 환급액(결산서 p.37~40, p.125)

○ 환급액은 38만 5천원으로 최근 3년간 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 [표]에서 보여주듯이 환급액 발생 세부사유가 대부분 행

정기관의 착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21~'19) 세입결산 중 환급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급액	환급액 세부내역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기타
2021	902,173,485	902,015,562	385	385		
			3건	3건		
2020	871,955,138	871,836,947	1,729	23		1,706
			4건	2건		2건
2019	865,617,303	865,505,360	174	174		
			2건	2건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순계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1	896,523	3,411	-	-	699 (-699)	-	899,934	857,931	4,065	738	3,327	157	37,781 (4.2%)
2020	856,888	13,323	-	-	1,462 (-1,462)	-	870,211	830,853	3,410	1,360	2,050	715	35,232 (4.0%)
2019	861,324	4,007	-	13 (-13)	732 (-732)	-	865,331	822,953	13,323	881	12,442	606	28,449 (3.3%)

가) 개 요

○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538억 58백만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8,999억 34백만원(순계예산¹²⁾)을 포함하여 총 1조 7,537억 92백만원(총계예산¹³⁾)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계규모로 1조 7,112억 67백만원이고 순계규모로 8,579억 31백만원임.

- 순계규모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0.2%인 40억 6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377억 81백만원에 해당함.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3~57)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377억 81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3억원 이상 사업은 ‘금천소방서 신설’ 등 12건임. ([표] 참고)

12)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13)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3억 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소방행정과	금천소방서 신설	17,260	16,919	15		326	1.9
2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14,919	14,069			849	5.7
3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지원	21,337	20,671			665	3.1
4	소방행정과	기본경비(출장비 등)	22,106	19,354			2,752	12.4
5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인건비계정)	634,539	612,745			21,794	3.4
6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19,993	15,904			4,089	20.4
7	예방과	시민안전의식 강화	238	147			91	32.2
8	안전지원과	후생복지 지원	11,063	9,819			1,244	11.2
9	안전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6,022	15,461			561	3.5
10	안전지원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PTSD 등) 관리	1,707	1,243	8		456	26.7
11	서울종합방재센터	기본경비(출장비 등)	1,329	999			330	24.8
12	소방학교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773	2,129			644	23.2

○ 이 중 ‘인력운영비(인건비계정)’은 예산현액 6,345억 39백만원 중 217억 94백만원(3.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공무 이외에 공적모임 금지¹⁴⁾에 따른 훈련·행사 등 외부활동 및 초과근무 시간 감소와 직원들의 재택근무 증가 등에 따른 것임([표]참조).

1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인사과-4031(2021.2.2.)호

[표] 2021년 인력운영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유
총계			634,539	612,745	96.6	21,794	3.4	
1	인력 운영비	보수	493,196	476,115	96.6	16,381	3.3	비번일 훈련 등 외부활동 취소 및 감소로 인한 초과근무 감소
4		직급보조비	14,154	13,663	96.5	491	3.4	집행잔액
5		성과상여금	23,568	24,265	99.9	2	0	-
6		연금부담금	83,866	79,822	95.1	4,043	4.8	소방재난본부 연금부담금
7		국민건강보험금	19,752	18,878	95.5	874	4.4	집행잔액

-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는 예산현액 199억 93백만원 중 40억 89백만원(20.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소방학교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공채임용¹⁵⁾ 신규교육대상자가 감소(300명예정→196명)함과 더불어 교육기간이 단축¹⁶⁾(24주 → 12주)되어 28억 26백만원이 미집행되고,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초과근무시간(20시간→12시간) 감소에 따라 11억 95백만원이 미집행됨에 따른 것임([표]참조).

15) 소방청 주관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21.2.26. ~ 8.31.)

16) 장기간의 합숙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금천소방서 신설 정원증원 및 퇴직결원 보충을 위해 교육기간 단축('22.1월 배치 완료)

[표] 2021년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유
총 계			19,993	15,904	20.4	4,089	20.4	
1	인력 운영비	보수	1,416	1,403	99.0	13	0.9	집행잔액
2		기타직보수	6,551	3,724	56.9	2,826	43.1	신규교육 대상자 감소 및 교육기간 감소로 잔액발생
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253	9,057	88.3	1,195	11.6	코로나로 인한 초과근무 등 근무시간 감소
4		직급보조비	182	155	85.4	26	14.5	집행잔액
5		성과상여금	112	93	83.0	19	16.9	집행잔액
6		연금부담금	1,308	1,308	100.0	0	0	-
7		국민건강보험금	168	161	95.9	6	4.0	집행잔액

- 다음으로, ‘시민안전의식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억 38백만원 중 91백만원(32.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표]참조),

[표] 2021년 ‘시민안전의식 강화’ 사업 세부 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이월사유
계	238	147	91	32.2	
서울안전한마당	100	55	45	45.0	강화된 생활속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소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실시간 생중계 행사 취소 후 메타버스 행사로만 부분 추진 (실시간 생중계+메타버스 → 메타버스)
소방119동요대회	40	1	39	97.5	소방청 지침에 따라 기존 콘서트 홀에서 개최하는 오프라인 방식에서 각 가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는 영상 경연대회 방식으로 변경 (오프라인 경연대회 → 영상 경연대회)
몸짱소방관 달력 사업	22	16	6	27.3	비대면 영상심사, 라이브 방송을 통한 런칭행사등 비대면 행사를 추진하여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서울시의 행사 조정 공문에 따라 기부금 전달식이 취소됨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	이월사유
서울소방안전 작품공모전	7	6	1	14.3	수상자 대상 시상용 문화상품권 구매와 관련하여 서울시 문화상품권 연간단가계약(재무과)에 따라 할인 구매하여 집행잔액 발생
시민참여행사 언론홍보	40	40	-	-	-
불조심 강조의 달	29	29	-	-	-

-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행사 조정 요청에 따라 모든 대면행사가 중지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 시민안전의식 강화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기존의 대면 형태의 행사 운영방식 이외에도 대시민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다음으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10억 63백만 원 중 12억 44백만원(11.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주요 사유로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건강검진) 항목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인한 8억 6천만원, 휴양시설 및 바우처 집행잔액 2억 6천만원, 가족친화프로그램 미집행액 9천 4백만원 등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이 중 특수건강진단(건강검진) 사업 차액발생 사유는 서울소방의 경우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20.6월)¹⁷⁾

에 따라 변경된 검사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소방청에서 사업추진 과정 중 일부 타 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인근 병원의 검사 장비 미비 등의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이 발생함에 따라 검사항목을 전국 공통으로 재조정함에 따른 것임.

[표] 특수건강진단(건강검진) 변동 내역

- 뇌혈관 촬영(MRA) / 500천원 → (변경) 경동맥 초음파 / 87천원
- 24시간 심전도 / 200천원 → (대체) 심장초음파 / 180천원
- 고막운동성검사 / 10천원 → (변경) 유소견자만 시행(2차 정밀검진)
- 유콘산(소변검사) / 23천원 → (변경) 유소견자만 시행(2차 정밀검진)

- 동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일부 사업들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일부 이해되나, 2021년도에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예산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7억 7백만원 대비 4억 64백만원(27.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17) □ 특수건강진단 검진항목 개정내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전부 개정(2020.6.4.) 소방청 훈령 164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전부 개정 발령 알립(소방청 소방정책과-4140)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일부 개정(2021.4.6.) 소방청 훈령 206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 개정 발령 알립(소방청 소방정책과-2771)

-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개선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의 미운영과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이용률이 감소¹⁸⁾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힐링사업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음.

다) 예산이용(결산서 p.61)

- 예산의 이용은 없음.

라) 예산전용(결산서 p.62)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¹⁹⁾에 의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성과상여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전용([표] 참고) 1건에 6억 99백만원을 총당하여 사용하였음.

18) ‘119안심협력병원’으로 운영중인 기관 중 3개 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이대서울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외래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아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

19)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표] 2021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 목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699,077	699,077		
1	소행	방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699,077	'21.03.25.	2021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으로 인한 평가기간 중 퇴직자 성과상여금 부족분 확보
	소행	방과	인력운영비	303-02 연금부담금	699,077		

- 예산 전용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 편성 당시 성과상여금은 기준일(12월 31일) 퇴직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21.1.22)」 개정으로 기준일이 아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그 대상자가 당초 54명에서 184명으로 130명이 증가해 이를 인력운영비 보수예산에서 충당한 것임.

[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나.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나.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 다만, ‘인력운영비(보수)’의 경우 전용 감액분 이외에도 163억 81백만원(p.27, [표]참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인력운영비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신중한 조

사와 예측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마) 예산이체 (결산서 p.63)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바) 예산변경 (결산서 p.64)

- 예산의 변경은 없음.

사) 예비비 (결산서 p.67)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²⁰⁾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총 2건에 15억 8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표] 예비비 사용 현황

(단위: 천원)

연 번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건)				1,582,472	1,582,054	417	
1	소 행 정 과	소방행정타운 건립	배상금등	372,125	371,707	417	소방행정타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목적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비	1,210,347	1,210,347	0	금천소방서 신설공사비 증액분 지급

20)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먼저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소방행정타운 1단계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사도급계약자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 과소산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법원에서 청구금액 일부(7.74%)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지금까지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3억 72백만 원을 사용한 것임.
 - 이는 소방재난본부가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 소송개요 및 판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건 명 : 2019가합575993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4,098백만원) - 당 사 자 : (원고) 1.○○건설 주식회사, 2.주식회사 ○○산업 / (피고) 서울특별시 - 청구취지
<p>① 예정가격 과소산정으로 발생한 손해액, ②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시공 내역 누락분, ③ 가설울타리 물량증가분, ④ 골조공사 수량이 도면과 내역 불일치분 추가공사비 등 4,098,589천원을 지급 청구함</p>
<p>- 판결결과 : 일부인용(7.74%, 317백만원), 기 각(92.26%)</p>
<p>피고는 원고 1에 161,870,940원, 원고 2에 155,523,060원 각각 지급 ※ 지연이자 이율 : '19.7.1.~'21.6.17.(6%), '21.6.18.이후(12%)</p>

- 다음으로 ‘금천소방서 신설’ 사업은 당초 '21.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청사 전면에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으로 인해 시흥동 방면 긴급출동 시 소방차량 도로횡단이 불가하여 재난현장 도착시간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사 앞 시흥대로 보도후퇴를 위해 전신주·통신선로 이설 등의 추가 공사로 예비비 12억 1천만원을 사용한 것임.



[그림] 금천소방서 출동 현황

- 동 사업은 당초 2016.1월 ~ 2021.10월까지 장기로 계획된 사업으로 사업 전이나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준공에 임박하여 이처럼 예상치 못한 추가공사와 준공 지연('22. 1월 준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됨.
-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공사 현장 조사 등을 보다 면밀히 하여 이처럼 공사 준공 시점에서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 차년도 사고이월²¹⁾(결산서 p.157~158)

- 2021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 10건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 예산현액 129억 14백만원 대비 25.8%인 33억 27백만원([표] 참고)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2021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 부서 (과)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합 계		12,914	3,327	57	25.8	
소방행정과	①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7,793	657	0	8.4	설계준공 미도래, 철거 및 폐기물 지연, 문화재 발굴 및 토공사 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 대금 등 지급을 위한 사고이월
	②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부대비)	22	15	0	68.2	지장물 공사 준공지연, 소방서 운영 준비 등으로 개서식 행사관련 부대비 사고이월
	③-1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사무관리비)	45	19	15	42.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반영하지 못해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과 추가경정을 통한 예산 확보 후 '21.9.7. 착공되어 준공일이 '22.6월로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③-2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시설비)	2,837	1,742	35	61.4	
	③-3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감리비)	390	115	3	29.5	
	③-4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65	51	0	78.5	
재난대응과	④-1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시설비)	486	80	0	16.5	사전절차 지연과 코로나19로 인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설계 변경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④-2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감리비)	8	3	0	37.5	(지상5층 증축 연면적 129.83㎡ → 지상3층, 44.25㎡)
예방과	⑤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968	530	0	54.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소방시설 설치비용 부담,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22.6.30.)이 남은 시점에서 영업주 관망의 사업지연으로 화재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취지에 입각하여 사고이월
안전지원과	⑥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 (전산개발)	300	115	4	38.3	소방청 주관 5개 시도(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종합계약 추진사업으로 소방청에서 발주(21. 6월) 및 2차례 유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지연(21. 8월 선정), 사업기간 6개월(180일)로 연내 준공 불가로 사고이월

21)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말함.

-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795억원을 투입하여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입주하는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장기계속사업인데
-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77억 93백만원 중 8.4%인 6억 57백만원을 사고이월함.

[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01 ~ 2024.10 ('21.12월 현재 설계진행 중)
○ 사업규모 : 지상 12층, 지하 4층, 연면적 17,789㎡, 부지면적 1,987㎡
○ 사업비 : 795억원 (건축 530억원, 상황실 등 전산시스템 265억원)
○ 입주부서 :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
※ 종로구 통합개발 규모
- 대지위치 : 종로구 삼봉로43 (현 종로구청사, 종로소방서 부지)
- 사업규모 : 지상17층, 지하5층 / 연면적 66,907㎡ / 부지면적 8,622㎡
- 입주기관 : 종로구청·구의회·보건소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 건축물용도 :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전체사업비 : 2,599억원 (건축공사비 1,681억원)

- 사고이월 사유는 종로소방서 철거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철거 계획과 달리 옥상층과 5층 바닥에 별도의 철골 구조물이 발견되어 기존 압쇄공법 대신 철골을 절단한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공법으로 변경되었고,
- 또한 지하층 철거과정에서도 보일러와 전기저압반 등 지하 구조물이 발견되어 철거공정이 지연되면서 철거 완료 이후 예정

되었던 건설폐기물 처리작업,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 일련의 사업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됨에 따른 것임.

[표] 일정 변경 내역 및 지연사유

연번	공사내용	계약기간		비고
		당초	변경	
1	舊청사 철거 공사	'21.5.10.~'22.11.9. (공해청구 가설요리 관련 포함)	'21.5.10.~'22.11.9. (공해청구 가설요리 관련 포함)	중로소방서 임시청사 완공일 이후인 '21.10월부터 철거공사 본격적 진행
2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1.6.4.~'21.9.11.	'21.6.4.~'22.6.23.	舊 중로소방서 철거지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기간 연장
3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21.8.25.~'22.6.23.		舊 중로소방서 철거 후인 '21.11월부터 진행
4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1.11.24.~'22.4.22.		실시설계를 토대로 배수계통도 작성 등 용역 진행 가능
5	문화재발굴조사 중 토공사	'21.9.27.~'22.7.23.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진행 추이에 따라 토공사 진행
6	설계 용역	'20.10.30.~'22.1.25.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후 문화재청 심의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함

- 이는 철거작업 전에 설계도면을 비롯한 실사 등을 통하여 철거 물량, 방법, 구조물 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실시설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사업은 노후 된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 36백만원 중 57.7%인 19억 27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사무관리비	45	19	15	42.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반영하지 못해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과 추가경정을 통한 예산 확보 후 '21.9.7. 착공되어 준공일이 '22. 6월로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 고이월
	시설비	2,837	1,742	35	61.4	
	감리비	390	115	3	29.5	
	자산및물품취득비	65	51	0	78.5	
합 계		3,337	1,927	53	57.7	

- 사고이월 사유는 건설기술진흥법(19.7.1.) 개정되어 건설사업 관리용역(상주감리)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늦게 인지해 감리예산을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면서 공사 착공('21. 9월)이 지연되어 준공기한('22.06월)이 차년도로 미루어짐에 따른 것임.

[표]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 적용법령

건설사업관리란?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축물 및 건축설비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변경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감리방식	
○ (목적)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	
○ (대상)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토목공사(5억 이상), 전문공사(2억 이상)	
○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2('19년 7월 시행)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 상주감리)	
○ (도봉적용)	2019년 7월부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사항 적용한 건설사업관리 시행	
	-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 기존 건축법 비상주감리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용역(상주감리) 적용	
구 분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대 상	민간부분 발주공사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행 일	70. 3. 1.	19. 7. 1.(설계 입찰공고)
감리방식	비상주감리 / 상주감리 / 책임상주감리	직접감독(비상주) / 건설사업관리(상주)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상주)

-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업무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억 94백만원 중 16.8%인 8천 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그 사유는 송파소방서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 보강(증축)공사’와 관련해 사전절차 지연(서울시 건축심의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것임.

[표]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시설비	486	80	0	16.5	사전절차 지연과 코로나19로 인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설계 변경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지상5층 증축 연면적 129.83㎡ → 지상3층, 44.25㎡)
	감리비	8	3	0	37.5	
합 계		494	83	0	16.8	

- 당초 송파소방서는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을 5층 규모로 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외장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알루미늄 패널로 교체하고 풍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라는 등의 조건부로 의결(‘21.8.12)²²⁾을 받았으며

2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주요 내용 (2021.08.12.)

- 가로 경관을 고려하여, 외장재인 샌드위치 패널은 알루미늄 패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강조색으로 사용한 붉은 책은 채도를 낮추고, 주요색은 기존 건물 색과 유사하게 조정하기 바람.
- 풍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시 양측에 Wall Bracing(벽 버팀대)을 설치하기 바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실시설계를 한 결과('21.9.23), 기배정 예산 2억원으로는 부족하여 1억 66백만원을 추가로 배정 요청('21.9.29)하였으나 소방재난본부가 기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해옴에 따라 송파소방서는 기존 5층으로 계획했던 훈련장을 3층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설계변경 후 공사를 완료함. ('22.2.13준공)

[표] 추진 계획 및 일정 현황

과업명	계획일정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역
설치 소방서 선정 등	2~3월	2~3월	- 타 기관 현장견학 등(2.17.~19.) - 송파구청, 건축사 공사관련 업무 협의(21.3.) - 훈련장 공사 추진계획 수립(21.4.)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4월	6월	- 구조안전진단 용역(21.4.~5.) -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 및 계약체결(21.5.~6.)
경관심의 및 설계완료	5월	- 8월 12일(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 9월 23일 설계용역 완공 - 9월 29일 예산 추가배정(1억 66백만원) 요청 - 10월 25일 보강공사 변경 추진 계획 - 11월 11일 설계변경 완료	- 서울시 경관심의 후 조건부 의결(조건사항 반영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 필요) - 송파소방서에서 설계용역을 완료 후 예산 추가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소방본부는 기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회신 - 이에 송파소방서는 기존 5층으로 계획된 구조물을 3층으로 설계 변경 후 공사 추진
건축공사, 감리	6월	- 2021.11.10. 공사계약 체결	
소방전기 통신 공사	7월	- 2021.11.24. 전기공사 계약체결	
사용승인	7월	사업완료 2022.02.13	- 추진일정 지연에 따라 순연적으로 지연되고 사고 이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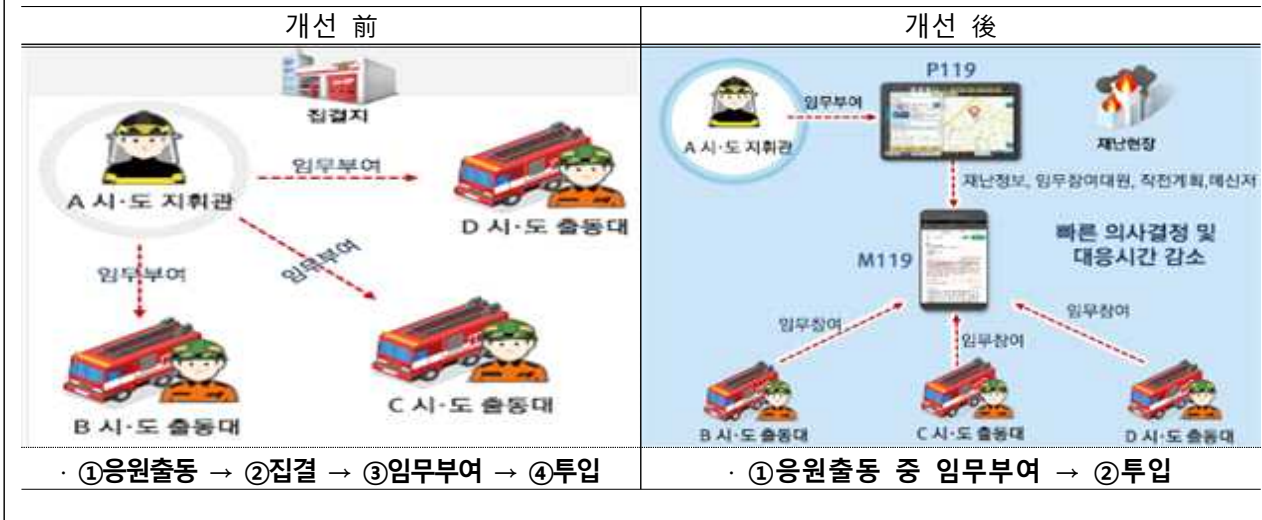
[표] 설계변경 전후의 조감도



- 결국, 이러한 계획변경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당초 계획했던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 공사 배경과 목적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사비 증액을 감수하더라도 그 활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다 사료됨.
- 이는 예산의 제약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외장재 변경 등)를 이행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의 계획된 규모를 축소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억원 중 38.3%인 1억 15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동 사업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소방청-시·도」, 「타 시·도」 간 현장대응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모바일 지도 서버의 확산 구축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앙(소방청)과 시·도 응용서버 간 연계구축하는 사업임.
- 사고이월 사유는 소방청에서 5개 시·도(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에 대해 종합계약을 추진하면서 6월부터 발주를 시작했으나 2차례 유찰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 기간 지연(8월 선정)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해짐에 따른 것임.

[표]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 사업 주요기능

- (재난정보) 전국 119출동상황에 대한 상황정보 제공
 - └ 정보공유 : 실시간 신고내역·출동차량·연락처·주소 등 공유
 - └ 메신저 : 소방청 및 전국 대원 간 지시·소통용 모바일 그룹채팅
소방안전정보,민원,국토부
 - └ 대상물정보 : 타 시스템 연계로 관계인·건축물 정보 제공
- (위치추적) 현장대원이 직접 신고자 아이폰,알뜰폰 포함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조화확인
- (현장지휘) 시스템을 통한 임무부여로 응원대의 신속한 작전 투입



[붙임1]

- 소방재난본부 결산검사 권고사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해당없음